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심 사 보 고 서

2005. 5.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4월 26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5월 6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2004.12.31)하여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 공동설치를 합의하고
- 동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 자치구로 송부되었음
- 규약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장래에 자치구간의 실질적인 협력·조정·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도 참여키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 (목적)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 (명칭) 정식명칭 및 영문표기(제2조)
- (사무소)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區에 둠(제3조)
- (기능)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 운영 등 상호 협력과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제4조)
- (구성 및 위원)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하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제5조)
- (조직)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하고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준용(제8조)
- (회의) 회장 또는 위원 1/5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제10조)
-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 등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함(제11조)

- (협의회의 재원)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상의 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제12조)
- (협의회의 재원의 규모)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함(제13조)
- (지출)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용(제15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2항
- 예산조치 :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
- 합 의 : 합의되었음(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천재)

- 제안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현안 공동사업인 방범용 CCTV 공동설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제142조(행정협의회외의 구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임.
-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는 2004년 12월 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같은 날 표준규약안을 의결하고, 200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에 보고를 마친 상태임.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한 규약안은 각 구의 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어있어 본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수정동의가 불가하므로 규약안 조문의 심사보다는 자치구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표준안대로 의결되어야 협의회가 구성 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므로서 방범용 CCTV 설치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자치구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우리구의 2005년도 방범 CCTV 설치 예산은 2억 4천만원이며, 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2억 4천만원을 앞으로 구성될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 받아 금년도에 48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본 규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果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 번호	154
----------	-----

제출년월일 : 2005. 4. .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를 설립(2004.12.31)하여 서울시 전역 방범용 CCTV 공동설치를 합의하고
- 동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 자치구로 송부되었음
- 규약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를 향수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장래에 자치구간의 실질적인 협력·조정·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도 참여키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함

2. 행정협의회 규약(안) 주요골자

- 가. (목적)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
- 나. (명칭) 정식명칭 및 영문표기(제2조)
- 다. (사무소)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區에 둠(제3조)
- 라. (기능)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 운영 등 상호 협력과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제4조)
- 마. (구성 및 위원)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하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제5조)

- 바. (조직) 회장 1인, 부회장 3인으로 하고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 준용(제8조)
- 사. (회의) 회장 또는 위원 1/5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제10조)
- 아. (협의회의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 등 협의·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함(제11조)
- 자. (협의회의 재원)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제12조)
- 차. (협의회의 재원의 규모)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의회에서 정함(제13조)
- 카. (지출)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준용(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 2항
-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 라. 기 타 : 규약 별첨

서울特別市自治區行政協議會 規約(안)

2005.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위의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Conference of Seoul Districts Public Administration(약칭 “CSDA”)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 소속區에 둔다

제4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사항
2. 공공시설(방범용 CCTV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2장 위 원

제5조(구성 및 위원)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구성하되, 위원은 현직 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이 유고 또는 결위된 때에는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 협의회회의 위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① 협의회회의 위원은 회장, 부회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며, 제4조 각호의 안건을 제안 상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위원은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의무)① 모든 위원은 협의회회의 규약 및 협의회회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위원은 협의회에서 의결·결정된 사항에 관한 사업경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재원의 부담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조직

제8조(조직)① 협의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둔다.

② 협의회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회장소속구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칙을 준용한다.

제9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또는 결위된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협의회회의 제반 사무를 판장 운영하고 협의회회의 결정사항을 처리 하며, 협의회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상황을 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회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4장 회 의

-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5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의개최와 연계하여 개최한다.
-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협의회)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협의안건의 상정안은 회장이 위원에게 배포하고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⑤ 회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토론 등을 거쳐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

- 제11조(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가 협의·조정 결정한 사무의 처리등 협의·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7조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재 정

- 제12조(협의회의 재원) ① 협의회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법령 및 규약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일반운영비의 부담금
 2.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한 부담금
 3. 협의회에서 정한 특별부담금
 4.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5. 기타 수입
- ② 제1항의 사업경비 및 운영비와 법령 및 규약 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해당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부담한다.

제13조(협회의 재원의 규모) ①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담금 및 지원금의 규모는 협회에서 정한다.

② 협회의 구성원은 제1항의 부담금 및 지원금을 협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고 협의회장 소속구인 운영부서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한다.

제15조(지출) ① 다음 각호의 재정은 집행한 후 사무간사가 이를 정산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1.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사업경비의 지출금
2. 협회에서 심의·의결된 일반운영비
3. 회의시 회의비·식대 및 여비
4. 기타 협의회 및 자문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사업경비 등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예산·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협회의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규약변경) 이 규약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